posco
포스코퓨처엠

공급망 ESG 관리 지침
(Supply Chain ESG Management Policy)

최종 수정일	'25. 10. 27.	최초 제정일	'23. 09. 25.
Rev.	2	표준번호	-
담당부서	상생협력섹션		
검토자	설비자재구매그룹장		
승인자	대표이사 사장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포스코퓨처엠「공급망 ESG 관리 지침」은 공급사와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ESG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포스코퓨처엠「공급망 ESG 관리 지침」은 모든 원자재·설비·자재 공급업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및 대리인 등 물품·인력 공급 및 기타 용역과 관련된 직접 거래 관계에 있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포스코퓨처엠 공급망에 잠재적 또는 실제적 ESG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간접적 거래 공급사도 본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제3조(범위)

포스코퓨처엠「공급망 ESG 관리 지침」은 국내외 공급사와의 직접적 거래 활동 관련하여 공급망 전반의 잠재적 또는 실제적 ESG 리스크를 식별, 평가, 개선,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퓨처엠의 공급사 행동규범 및 윤리특별약관을 준수하는 공급사와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포스코퓨처엠은 공급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ESG 리스크 발생을 방지 및 완화하도록 노력한다.
③포스코퓨처엠은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공급망 ESG 리스크를 점검, 개선한다.
④포스코퓨처엠은 공급사와 협업을 통해 공급망 ESG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제2장 실행방안

제5조(공급사 행동규범 준수 점검)

①포스코퓨처엠의 공급사 행동규범은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급사가 기본적으로 준수해

야 할 ESG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②포스코퓨처엠의 공급사 행동규범은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 및 공정거래, 경영시스템, 동반성장과 사회공헌, 품질경영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③포스코퓨처엠은 신규 공급사 등록 시 공급사의 포스코퓨처엠 공급사 행동규범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④포스코퓨처엠은 거래 공급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ESG 실사를 통해 포스코퓨처엠 공급사 행동규범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제6조(윤리특별약관 준수 점검)
①포스코퓨처엠의 윤리특별약관은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윤리적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공급사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윤리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②포스코퓨처엠의 윤리특별약관은 부정청탁, 금품, 뇌물제공 등의 비윤리 행위를 금지하며 비윤리 행위시 제재 방안을 명시한다.
③포스코퓨처엠은 구매계약 체결 시 윤리특별약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④포스코퓨처엠은 거래 공급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ESG 실사를 통해 윤리특별약관 동의여부를 확인한다.

제7조(구매계약 ESG 리스크 점검)
포스코퓨처엠은 신규 공급사 등록, 계약이행에 대한 성과평가, 사후관리 및 상시 리스크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ESG 관점의 구매계약 관리는 총 4단계로 구성된다.

①공급사 등록
1.포스코퓨처엠은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모든 공급사에 대해 상시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시황 및 업무 요건을 고려하여 등록 신청 접수 후 일정 기간 이후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2.포스코퓨처엠은 신규 공급사 평가 절차에 따라 공급사 평가를 실시하며, ESG 리스크를 보유한 공급사에 대해서 신규 공급사 등록을 제한한다.

②성과평가
1.포스코퓨처엠은 거래 공급사를 대상으로 공급사 성과평가를 최소 연 1회 실시한다.
2.포스코퓨처엠의 공급사 성과평가는 내부 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되며 거래 공급사의 재무 역량(신용도, 가격, 납기 및 품질)과 비 재무 역량 (환경, 안전, 노동, 인권 등)을 종합 평가한다.
3.포스코퓨처엠은 공급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공급사 차등화 조치를 실행한다.

③사후관리
1.포스코퓨처엠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PHP(POSCO FUTURE M Honored Partner, Excellent, Good 등급 공급사 중 심의)를 선발, 열위 공급사 입찰 참가 제한 등을 실시한다.

2.포스코퓨처엠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소싱 그룹 내 공급사 리스크를 점검하고 품질 등 계약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④상시 리스크 점검
포스코퓨처엠은 비윤리, 안전사고, 인권유린 등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구매계약이 체결된 공급사의 계약이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점검하고 공급 리스크를 관리한다.

제8조(공급망 ESG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포스코퓨처엠은 공급망의 ESG 리스크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공급망 ESG 실사를 실시한다.

①대상 및 주기
1.포스코퓨처엠의 공급망 실사는 직접적 거래 공급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영향도를 고려하여 간접적 거래 공급사 대상으로도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실사
1.포스코퓨처엠은 공급망 ESG 실사를 아래 프로세스에 따라 실시한다.
2.포스코퓨처엠의 공급망 ESG 실사는 서면실사 및 현장실사 총 2단계로 진행된다.
3.포스코퓨처엠의 공급망 ESG 실사는 포스코퓨처엠형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4.서면실사 결과 ESG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공급사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우선 실시하거나 병행할 수 있고, 현장실사는 외부전문가 주관으로 협업하여 진행한다.
[공급망 ESG 실사 프로세스]
계획 수립(기준 확립, 실사 주기, 대상 검토) → 서면실사(공급사 자체 ESG점검) →
현장실사(제3자기관 협업) → 개선 및 모니터링(개선합의 및 추진) → 고충처리(내부 채널) →
정보공개(공급망 ESG 보고서 발간)

③개선/모니터링
1.포스코퓨처엠은 공급망 ESG 실사 결과에 따라 ESG 리스크 개선활동을 실행한다.
2.포스코퓨처엠은 내부기준에 따라 확인된 ESG 리스크에 대한 개선 활동을 실행한다.
3.포스코퓨처엠은 공급망 ESG 실사 결과 확인된 실질적 또는 잠재적 ESG 리스크에 대해서 공급사에 개선 계획을 요청하고 개선 결과를 모니터링 한다. 다만, ESG 리스크 개선 활동에도 불구 ESG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해당 공급사와의 거래 관계를 중단할 수 있다.

④공급망 고충 처리
1.포스코퓨처엠은 홈페이지, 이메일 등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ESG(환경,사회,인권)와 관련한 공급망의 다양한 고충을 수렴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포스코퓨처엠은 공급망과의 소통 확대 및 고충 처리를 위해 관련 채널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급망에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⑤정보공개
1.포스코퓨처엠은 공급망 ESG 실사 결과에 대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소통을 한다.

제9조(공급망 ESG 역량 향상)
①포스코퓨처엠은 공급사와 공급망의 ESG 역량 제고를 위해 협업한다.
②포스코퓨처엠은 ESG 교육, 친환경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공급망의 ESG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③포스코퓨처엠은 공급사의 친환경 기술 개발 또는 친환경 공정 도입을 위한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④포스코퓨처엠은 친환경 물품 구매 확대로 공급망의 친환경 경쟁력을 강화한다.
④포스코퓨처엠은 책임광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급망 ESG 확산을 유도한다.

부칙 (공급망 ESG 관리 지침의 관리 및 운영)
①본 지침은 포스코퓨처엠 공급망의 ESG 관리 목적, 대상, 범위, 기본원칙 및 실행방안에 대한 관리 지침이며, 구매계약실 산하 상생협력섹션에서 본 지침의 제반 관리 업무 및 운영을 수행한다.
②상생협력섹션은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본 지침을 개정한다.
③ 거래 공급사의 현장실사는 주관 계약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ESG관리지침 기준을 준용하고 ESG평가지표를 반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주관 계약부서는 필요시 현업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현업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④ 상생협력섹션은 공급망 ESG관리의 종합적인 기준을 제개정하고, 주관 계약 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공급사 행동규범, ESG평가지표 등을 제공하여 원할한 실사가 진행할 수 있게 협조한다.
⑤ 2023.9.25 제정 / 2025.10.27 개정